

전기설비,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 
기술자격자(제10조제5항 관련)

| 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기·기계·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|

비고

1.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다.
2.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다.
3. 위 표의 전자 분야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, 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을 따른다.